

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-21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「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현장건의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항만구역의 적용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
- 나. 항만배후단지 임시 보관기간(72시간 이내) 기준 마련
- 다.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조명설비 기준 마련
- 라. 출입통제 장치, 피해 시설 등 기준 보완
- 마. 본문과의 별지서식 일치 및 문구 재정비

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nics.me.go.kr)의 자료실-법령정보 확인